

2021. 7. 2(금) 이사회 의결

장학금 지급 운영 규정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운영 규정

(제정) 2017. 12. 14

(개정) 2020. 7. 10

(개정) 2021. 7.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정읍시민 장학재단(이하 “재단” 이라한다)의 정관 제4조에 규정한 장학금의 지급사업의 일환으로 장학생 선발, 관리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①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녀로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교(관내, 관외)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단, 기혼자, 만학도, 부모가 없는 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재단에서 자체 선발하는 장학생 중에서 동일인일 경우 고등학교 2회, 전문대 1회 (4년제 학과 2회), 4년제 대학 2회로 한다.

③ 다양한 분야에서 특수한 재능을 발휘하여 정읍을 빛낸 초, 중학생에게 특수장학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 ①항에 의거 미 해당자

2. 정읍시에서 지급한 타 장학금 및 학자금을 수령한 자

3. 직업학교,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재학생인 자

제3조(선발인원) ① 재단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고등학교·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중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② 제 1항의 신입생 및 재학생의 선발비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③ 제2조 제⑤항에 의한 특수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4조(성적기준) ① 재단의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장학생은 학업성적 및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신입생으로서 당해년도 1학기 이수한 전과목 평점평균이 85점 이상인자

2.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년도 2학기과 당해년도 1학기 이수한 전과목 평점평

균이 85점 이상인 자

3. 정기학기(8학기)의 성적 및 학점 기준으로 한다. (계절학기 제외)
4. 대학교 신입생은 당해년도 1학기 평점평균이 90점 이상인 자
5. 대학교 재학생인 경우에는 전년도 2학기과 당해년도 1학기 평균평점이 90점 이상인 자
6. 복학생 및 편입생은 당해년도 1학기 평점평균이 90점 이상인 자
7. 매 학기 모두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8. 학교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에서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
9.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다만, 예·체능 특기자는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도내대회 1위 이내 입상자로 인정하는 자의 인원이 전체의 1/10을 초과하지 못하며, 또한 우수대학 또는 우수학과에 재학생으로 전체 선발인원의 20/100을 넘지 않는다.
10. 특수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이사회 의결로써 정하도록 한다.

제5조(선발기준) ① 장학생 선발 시 심사기준은 학업성적 50%, 가정형편 50%, 가산점으로 적용한다.

1. 학업성적 50% : 전년도 2학기과 당해년도 1학기의 평점평균 점수 적용
2. 가정형편 50% :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단,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적용한다.
3. 가산점 적용(각 0.3점, 최대 1.5점 적용)
 - 가. 소년·소녀가정 및 한부모가정(양부모 업는 가정 포함)
 - 나. 장애인 가정(본인 및 부모만 적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고엽제포함)
 - 라.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 마. 조손가정

- ② 특정학교 편중을 막기 위해 한 학교에 선발인원을 총 선발인원의 15%를 넘지 않는다. (단, 도내 4년대의 경우 20%)
- ③ 동점자 발생시 1순위 성적, 2순위 가정형편 순으로 결정하고, 두 항목 모두 동점일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으로 한다.
- ④ 1세대 2명 이상 지원 시 1명만 선발한다. 단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에 한하여 2명까지 선발

제6조(선발방법) ① 재단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장학생 및 학교의 선발 심사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소속 학교장이 추천한다.
 2. 대학신입생 및 재학생인 경우에는 소속 대학 학과장이 추천한다.
 3. 학교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에서 추천한다.
- ② 재단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장학생은 이사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③ 선발시기는 매학년도 개시 전까지 또는 상·하반기로 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 (별지1호) 와 장학금을 지급하고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재단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해년도 납입금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연구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③ 재단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년한은 1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절차)** ① 재단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장학생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선발요강을 작성하여 읍면동장 및 교육행정기관 (도교육청과 정읍교육청)에 배부하고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한다.
- ② 재단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재단 이사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지원서 (별지2호)
 2. 성적증명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경감대상자의 경우 차상위경감대상자 증명서 제출
 4. 재학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학생과 부모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6. 특기자의 경우 증빙자료 사본(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상자)
 7.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조회동의서(별지6호)
 8. 학적부(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9. 기타 보호자 확인서(해당자에 한함)(별지7호)
 10.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한부모 가정)
 - 나. 소년소녀가장 증명서
 - 다. 장애인 증명서

라.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③ 재단에서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학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재단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3호)
2. 관계기관에서 발부하는 증빙서류

제9조(선발통지) 장학생 및 연구비 지급대상으로 선발되었을 때에는 본인과 소속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제10조(장학금 및 연구비의 수령) 장학생 및 연구비 지급대상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이나 친권자 및 학교의 장이 수령한다.

1. 서약서 (별지4호)
2.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신청서 (별지5호)
3. 영수증

제11조(지급중단)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 할 수 있다.

1.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2. 휴학하였을 때
3. 학업성적이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자금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6.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할 때

② 연구비 지급대상 학교로 선발된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단 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2. 연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3. 기타 연구비의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할 때

제12조(장학생 및 학교의 의무) 장학생 및 학교는 본 재단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학업과 연구에 일심전력하며 장래 이 고장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장학생 및 학교의 관리) 재단 이사장은 매년 장학생 및 학교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학업성적 및 연구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여 평가자료로 활용한다.

제14조(예외)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4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제 호

장 학 증 서

학 교 명 : 학년 반

성 명 :

장학금 지급액 : 금 원

위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우리고장 인재양성을 위하여 정읍시민 장학재단이 20 년도
장학생으로 선발하였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함

20 년 월 일

재단
법인 정읍시민 장학재단 이사장

(별지 2호)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학번	대학생 기재			출신고교	대학생 기재			
학교명	학부(과)			대학생 기재			학년	
E-Mail								
보호자	주소							
	성명			관계	학생의 ()			
	직업			근무처				
연락처	주택전화				직장전화			
	핸드폰				보호자 핸드폰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직업 (구체적으로 근무처 명시)				

본인은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한 20 학년도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날인 또는 서명)

보호자 : (날인 또는 서명)

(재)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4호)

서 약 서

본인은 귀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명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에 관한제반 규칙을 준수하여 학업에 전념하여 자랑스러운 정읍인으로서 지역발전의 역군으로 국가 사회에 이바지함은 물론 재단의 운영발전에도 적극 참여 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이에 서약 합니다.

【 서 약 사 항 】

- 재학 중 품위유지 및 학업성적 유지(B학점 이상)
- 재학 중 학사 변동사항 신고 이행
- 졸업 후 지역개발 참여 및 취업상황 연락
- 졸업 후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상황 연락

20 년 월 일

대 학 교 과 년

중·고등학교 년

장학생 : (인)

보호자 : (인)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귀하

(별지 5호)

장 학 금 신 청 서

학 교 명 : 학교 과 학년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신청금액 : 금 원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20 학년도 장학금(연구비)을
아래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귀하

(별지 6호)

정읍시민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학교, 학년	장학금 지원	수집일로부터1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학금 지원 선정 지급등과 관련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등본	거주 확인	수집일로부터10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학금 지원 선정 지급등과 관련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e-mail, 휴대폰번호, 가산점관련증빙서류	공지사항 안내 및 가산점 부여	수집일로부터10년,

※ 위의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학금 지원 선정 지급등과 관련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5항에 의거 만14세 미만아동의 개인정보처리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음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부 (서명 또는 인)

모 (서명 또는 인)

(재)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7호)

기 타 보 호 자 확 인 서

신청 학생	성 명			
	주 소 (도로명 주소)			
	재학학교			
학생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생과의 관계			
	학생보호 사유			
발 급 용 도	20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신청			
<p><참고사항></p> <p>기타보호자 : 부모의 사망·행불 등으로 사실상 학생의 교육·생계를 책임지는 자로 행정에서 인정하는 자</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확 인 자(복지담당자) (인)</p> <p style="text-align: right;"> 읍·면·동·장 (직인)</p> <p>(재)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귀하</p>				

(별표 1호)

학업성적 평점 기준표

평 점	백분위 기준점수
50	100
48.8	99.00 ~ 99.99
47.6	98.00 ~ 98.99
46.4	97.00 ~ 97.99
45.2	96.00 ~ 96.99
44.0	95.00 ~ 95.99
42.8	94.00 ~ 94.99
41.6	93.00 ~ 93.99
40.4	92.00 ~ 92.99
39.2	91.00 ~ 91.99
38.0	90.00 ~ 90.99

(별표 2호)

건강보험료 평점 기준표

(전년도 하반기 ~ 당해연도 상반기)

○ 부·모 모두 제출 하도록 하여 합계액으로 평가

평점	등급	건강보험료 납입료	비고
50	1	5만원 미만	
49.7	2	5만원 이상 ~ 7만원 미만	
49.4	3	7만원 이상 ~ 9만원 미만	
49.1	4	9만원 이상 ~ 11만원 미만	
48.8	5	11만원 이상 ~ 13만원 미만	
48.5	6	13만원 이상 ~ 15만원 미만	
48.2	7	15만원 이상 ~ 17만원 미만	
47.9	8	17만원 이상 ~ 19만원 미만	
47.6	9	19만원 이상 ~ 21만원 미만	
47.3	10	21만원 이상 ~ 24만원 미만	
47.0	11	24만원 이상 ~ 27만원 미만	
46.7	12	27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46.4	13	30만원 이상 ~ 33만원 미만	
46.1	14	33만원 이상 ~ 36만원 미만	
45.8	15	36만원 이상 ~ 39만원 미만	
45.5	16	39만원 이상 ~ 42만원 미만	
45.2	17	42만원 이상 ~ 45만원 미만	
44.9	18	45만원 이상 ~ 48만원 미만	
44.6	19	48만원 이상 ~ 51만원 미만	
44.3	20	51만원 이상 ~ 54만원 미만	
44.0	21	54만원 이상 ~ 57만원 미만	
43.7	22	57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43.4	23	60만원 이상 ~ 63만원 미만	
43.1	24	63만원 이상 ~ 66만원 미만	
42.8	25	66만원 이상 ~ 69만원 미만	
42.5	26	69만원 이상 ~	